한중 FTA 주요 내용과 쟁점

- 1. 아래 첨부자료는 2013년 9월 산업통상부의 자료로 정부 입장에서 '한중 FTA 추진동 향'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 2. 2012년 5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개시 선언을 하여 2013년 9월까지 7차 례 협상을 거쳐 1단계 협상이 타결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3.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상품 분야 시장개방의 기본 골격은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군(Nor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초민감품목군(Highly Sensitive Track)으로 분류하여 차등적 시장개방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4. 일반품목군은 즉시 또는 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 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군은 양허 제외, 관세 부분감축, 계절관세, 관세율 할당(TRQ) 적용합니다.
- 5. 한중 양국은 관세 철폐 상품의 범위를 품목 수 기준 전체 상품 수의 90%, 수입액 기준 85%rk 되도록 하고, 초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했습니다.
- 6. 한중 FTA의 관세철폐율 수준은 한미FTA(관세철폐율 98.3%), 한EU FTA(관세철폐율 99.6%)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 7. 한중 교역 품목이 약 12,000개이므로 초민감품목은 1,200개 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농수산물,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공산품 생산 산업계에서 초민감품목 적용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8.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를 보면, HS 10단위 기준 농산물은 상품수가 1,200개, 수산물 750개, 임산물 440개(단기소득 임산물 119개, 목재 303개, 석재 18개)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초민감품목 적용을 받으려는 부문 업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9. 그러나 초민감품목군에 속한다고 해서 시장개방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업분야의 완전 개방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중국 측이 관세율 인하, 저율관세 수입 보장, 계절관세 적용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박상표(건강과대안) 정리

한·중 FTA 협상 추진 동향

2013. 9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

Ⅰ. 추진 경과

2005.7월~2006.9월 민간공동연구 진행
2007.3월~20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2010.9월~2012.4월 정부간 사전 실무협의 진행, 민감 분야 보호를위해 단계별 협상방식(1단계:모델리티/2단계:협정문 및 시장접근) 채택
2012.1.9. 한·중 정상회담(베이징)에서 협상 개시 합의 후, 국내 절차 추진
※ 공청회(2.24),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4.1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4.23)
2012.5.2. 한·중 통상장관회담(베이징) 계기, "한·중 FTA 협상 개시어 관한 통상장관간 공동성명" 발표
2012.5월~2013.4월간 6차례 협상을 개최, 상품을 비롯한 각 분이 모델리티 협의

회 의	주요 내용
1차 (12.5.14, 베이징)	•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2차 (12.7.3~5, 제주)	・상품 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를 개시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 ・원산지・통관・무역원활화 별도 챕터에 합의
3차 (12.8.22~24, 웨이하이)	·상품 분야 품목군별 분류방식 및 정의 등에 합의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작업반 개최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대화 개최
4차 (12.10.30~11.1, 경주)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논의 진행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 논의 개시 지재권 협상 대상 포함에 합의, 농수산 협력 분야 전문가 대화 개시
5차 (13.4.26~28, 하얼빈)	·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 및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 지속 · 환경 분야 전문가 대화 개시
6차 (13.7.2~4, 부산)	•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 등 상품 모델리티에 의견 접근 •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분야 포함에 합의

□ 2013.9.3~5. 개최된 제7차 협상(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1단계 모델리티 협상 마무리

Ⅱ. 협상 추진 현황

1 협상 방식

- □ 단계별 협상 방식 채택 배경
 -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하여,
 -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우선 정한 후
 -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 진행
 - ※ 일반적인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으로 돌입
- □ 1단계 협상 : 모델리티 협상 진행
 - (상품 분야) 모든 품목을 3개 품목군(일반/민감/초민감)으로 구별 하고, 품목군별 비중과 처리 방식을 결정
 - o (여타 분야) 협상범위 및 분야별 협상 가이드라인 작성
- □ 2단계 협상 : 모델리티에 기초한 전면적 품목 협상 진행
 - 일괄타결 방식으로 전면 협상을 진행
 - 구체적인 협정문안(text) 및 상품, 서비스, 투자 양허표 작성 등
 - 상품분야는 1단계에서 합의된 모델리티 범위내에서 구체 품목별 협상 진행
 - 서비스, 투자는 구체적 개방분야를 결정하는 양허 협상 진행
 - 기타 분야 구체 협정문안 협상

2 제1단계 협상 주요 결과

1 상품 분야

□ 상품 양허

- (품목군 분류 및 처리방안)
- 전 품목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의 3가지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군별 처리방안에 합의
- (자유화율)
-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 비중을 합산한 수치
 - ※ 전체 품목의 10%(수입액 15%)를 초민감품목군으로 지정 가능
- 추후 협상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 합의

품목군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古今正	(Normal Track)	(Sensitive Track)	(Highly Sensitive Track)
처리방안	즉시철폐~ 10년내 철폐	10년이상~ 20년내 철폐	양허 제외, TRQ*,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
자유화율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품목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

- * 저율할당관세(TRQ : Tariff Rate Quotas) :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 * 계절관세(Seasonal tariff rates): 국내 출하기, 비출하기에 따라 가격의 영향이 큰 농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해당 물자의 국내 출하기에는 높은 관세율을, 비출하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

② 비관세장벽/개성공단

○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협의 메커니즘 필요성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이슈를 2단계 협상시 논의하기로 합의 ○ (개성공단)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 이슈를 한중 FTA에 포함시키 기로 함을 재확인

③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 (원산지) 원산지 기준 및 절차 등 요소를 논의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합의
- **(통관·무역원활화)**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한 제도, 관세 행정의 일관성・투명성 확보 및 관세위원회 설립 등 이슈를 논의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합의

4 무역구제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일반적인 구성 요소에 합의

5 SPS, TBT

- **(SPS)**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
- (TBT)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구성요소에 합의

2 시비스·투자 분야

Ⅱ 서비스 분야

○ WTO 서비스협정(GATS) 플러스 수준의 자유화 추구 원칙, 내국민 대우, 국내규제 등 협정문 주요 요소에 합의

② 투자 분야

○ 기존 **양국간 투자 협정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송금, 수용 및 보상, ISD, 투명성 등 협정문 주요 요소에 합의

3 규범 분야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2단계 협상 논의에 합의

<규범분야 이슈별 논의대상>

· 지재권 : 보호수준 및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 행정절차 개선, 협력 확대 등

· 경쟁 : 투명성 제고, 당국간 협력 등

· 투명성: 정보제공, 행정절차보장, 시법·준시법 재판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 환경 : 환경보호 의무, 환경협력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

4 협력 분야

□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분야 2단계 협상 논의에 합의

<협력분야 이슈별 논의대상>

· 정부조달: 정보교환, 양국 정부조달협력 관련사항 및 후속협상 개최 문제

· 산업협력 : 에너지·자원, 철강,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 농수산협력 :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분야 협력을 논의 대상

으로 하는데 합의

Ⅲ. 향후 대책

- □ 금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 향후 양측은 금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全 분야에 걸쳐 **협정문(text)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됨

<분야별 2단계 협상 목표>

- · 상품 : 민감품목 보호 및 주력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 · 서비스·투자: 서비스 시장 개방·투자자유화 의무를 구체화하여 교역 환경 개선
- · 규범·협력 : 협력 채널을 통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페·완화 이외에도 중국 내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또한 정부는 2단계 협상에 대비하여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첨부: 한·중 교역 현황

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년 도	한 국	중 국	비고
		0010	11,292	82,270	중국, 한국의 7.3배 중국(세계 2위), 한국(세계 15위)
1인당 GDP(명	목, 불)	2012	23,112.9	6,075.9	중국(세계 88위), 한국(세계 34위)
경제성장률(실	질, %)		2.0	7.8	_
인 구		2012	5,001만 명	13.5억 명	중국, 한국의 27배 중국(세계 1위), 한국(세계 26위) ☆ 전세계 인구: 68.6억 명
국토면적(km²)	국토면적(km²)		99,720	9,596,961	중국, 한국의 96배 중국(세계 4위), 한국(세계 109위)
 對세계	총액		10,675	38,675	중국, 한국의 3.6배
상 품	수출	2012	5,479	20,501	중국, 한국의 3.7배
교역	수입	2012	5,196	18,173	중국, 한국의 3.5배
(억불)	수지		283	2,328	중국, 한국의 8.2배
對세계 총액			2,190	4,706	중국, 한국의 2.1배
서비스	수출	2012	1,109	1,905	중국, 한국의 1.7배
교 역	수입	2012	1,082	2,801	중국, 한국의 2.6배
(억불)	수지		27	△897	_

- * 한국과 중국의 對세계 서비스교역액 출처는 각각 한국은행(잠정치)과 중국상무부
- *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중국상무부

2 교역

□ 한-중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증가율(%))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연도	對세계	對中	중국 수출 비중	對세계	對中	중국 수입 비중	對세계	對中	
2001	1,504(-12.7)	182(-1.4)	12.1%	1,411(-12.1)	133(3.9)	9.4%	93	49	
2002	1,625(8.0)	238(30.6)	14.6%	1,521(7.8)	174(30.8)	11.4%	103	64	
2003	1,938(19.3)	351(47.8)	18.1%	1,788(17.6)	219(25.9)	12.3%	150	132	
2004	2,538(31.0)	498(41.7)	19.6%	2,245(25.5)	296(35.0)	13.2%	294	202	
2005	2,844(12.0)	619(24.4)	21.8%	2,612(16.4)	386(30.6)	14.8%	232	233	
2006	3,255(14.4)	695(12.2)	21.3%	3,094(18.4)	486(25.6)	15.7%	161	209	
2007	3,715(14.1)	820(18.0)	22.1%	3,568(15.3)	630(29.8)	17.7%	146	190	
2008	4,220(13.6)	914(11.5)	21.7%	4,353(22.0)	769(22.1)	17.7%	-133	145	
2009	3,635(-13.9)	867(-5.1)	23.9%	3,231(-25.8)	542(-29.5)	16.8%	404	325	
2010	4,664(28.3)	1,168(34.8)	25.1%	4,252(31.6)	716(31.9)	16.8%	412	453	
2011	5,552(19.0)	1,342(14.9)	24.2%	5,244(23.3)	864(20.8)	16.5%	308	478	
2012	5,478(-1.3)	1,343(14.8)	24.5%	5,195(-0.9)	808(-6.5)	15.5%	283	53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對중국 교역량 비중

(단위 : 억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교역량(A)	5,456.6	6,348.5	7,283.3	8,572.8	6,866.2	8,916.0	10,796.3	10,674.5
대중국 교역량(B)	1,005.6	1,180.2	1,450.1	1,683.2	1,409.5	1,884.1	2,206.2	2,152
비중(B/A)	18.4%	18.6%	19.9%	19.6%	20.5%	21.1%	20.4%	20.2%

□ 한·중 서비스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교역액	18,110.4	23,959.4	18,445.3	24,401.1	26,154.0	27,946.2
서비스지급	8,967.9	10,689.5	8,669.0	10,651.0	12,038.9	12,066.7
서비스수입	9,142.5	13,269.9	9,776.3	13,750.1	14,115.1	15,879.5
서비스수지	174.6	2,580.4	1,107.3	3,099.1	2,076.2	3,812.8

^{*} 자료: 한국은행

□ 한·중 투자 교류 현황

(단위: 억불, %, 신고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분기	누계
중 → 한 (비중*)	0.5 (0.8)			0.4 (0.3)	3.8 (3.7)	3.4 (2.9)	1.6 (1.4)	4.1 (3.2)	6.5 (4.8)	14.5 (4.5)		73.5 (2.4)
한 → 중 (비중*)	29.5 (44.9)	37.6 (40.6)	37.0 (37.8)	46.0 (23.5)	73.3 (24.1)	49.1 (13.2)	27.6 (8.8)	44.2 (12.7)	48.8 (10.8)	64.8 (27.7)	8.6 (12.0)	588.1 (17.3)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 * '중→한' 비중은 전세계의 對한국 투자액() 대비 중국의 투자액 비중. '한→중' 비중은 우리나라의 對세계 투자액() 대비 對중국 투자액 비중

□ 한·중간 인적교류 현황(일시입국 비자발급)

(단위:만명, ()는 증가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방한 중국인	90	107	116.8	134.2	187.5	222.0	283.7
	(26.3)	(19.2)	(9.3)	(14.9)	(39.7)	(18.4)	(27.8)
방중 한국인	392	478	396	319.8	407.6	418.5	378.9
	(17.6)	(21.8)	(△17.2)	(△19.2)	(27.5)	(2.7)	(2.7)

- * 한·중 양국간 운항편수는 52개 노선, 주 837회 상회(부정기선 제외)
- * 자료: 한국관광공사·중국국가여유국(旅遊局)